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579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농업회사법인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7. 4.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2. 8.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2. 8. 5. 접수 제308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 1) E은 2019. 3. 12. D의 F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강릉시 G 답 2,893㎡ 외 5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2억 2,000만 원, 채무자가 D, 근저당권자가 F조합’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원고는 2022. 4. 15. E으로부터 강릉시 G 답 2,893㎡ 외 5필지를, 매매대금의 일부는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원고는 2022. 11. 4. F조합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100,147,819원을 변제하였다.
 - 3) 원고는 2022. 11. 16. D을 상대로 원고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3. 6. 20. ‘D은 원고에게 60,147,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5.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나. D은 2022. 8. 4.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2. 8. 5.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30805호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위하여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상태였고 D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2. 11. 4.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한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D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채무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강문희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당진시 아파트[도로명주소]충청남도 당진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구조

면 적 : 75.405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충청남도 당진시 대 33022.1㎡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33022.1 분의 55.8400

